

(auri)

한옥정책 BRIEF

No. 7

한옥지원조례 제정현황 및 운영 특성

심경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www.hanokdb.kr

한옥정책브리프는 한옥정책과 관련된 지식, 문화, 산업이슈를
간략하게 정리한 학술자료입니다.



한옥지원조례 제정현황 및 운영 특성

1. 들어가며

한옥지원과 관련한 조례는 크게 한옥밀집지역내 기준 한옥의 보전을 위한 지원조례와 관광목적으로 운영되는 한옥 민박시설이나 체험시설 등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지원조례가 있다. 2012년 9월 현재 전국적으로 총 48 개의 한옥관련 지원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이 가운데 한옥 개·보수 지원조례는 총 40개 지역에서 제정, 운영되고 있다. 여기서는 한옥관련 지원조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옥의 건축 및 개·보수를 위한 지원조례¹를 중심으로 제정현황 및 운영 현황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한옥관련 지원조례 제정 배경 및 경과

한옥의 수선 등에 대한 지원조례는 2002년 5월 서울시에서 처음 제정하였는데, 이는 북촌한옥의 보전정책으로부터 출발한다. 즉 과거 규제 일변도의 한옥보전 정책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규제완화에 따라 한옥이 다수 멸실되고, 한옥이 있던 자리에 새롭게 신축된 다세대 건물이 북촌의 경관과 주거환경을 크게 훼손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서울시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새로운 북촌 가꾸기 정책으로 한옥등록제를 마련하게 되는데, 이는 주민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한옥을 등록하면, 서울시가 등록된 한옥의 개보수시 비용을 지원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2001년 1월 건축조례에 근거조항을 마련하였다가 2002년 5월에 독자적인 한옥지원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서울시를 필두로 2001년 5월에 경주시가 건축조례에 한옥건축에 대한 지원 사항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였으며,² 2002년에 전주시, 2005년에 전라남도가 한옥보전지원조례를 제정하였다. 한옥지원조례의 제정은 2008년부터 활발하게 추진되었는데, 특히 전라남도 내 기초자치단체의 한옥지원조례 제정이 두드러진다. 전라남도는 2006년부터 행복마을사업과 한옥을 연계하여 한옥건축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2008년부터 전라남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한옥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활발해졌다. 한옥지원조례는 2011년에 거제시, 창녕군, 목포시, 충청북도 4개 지역, 2012년에 단양군, 안동시, 하동군 3개 지역에서 추가로 제정되는 등 최근까지도 꾸준히 제정되고 있는 상황이다.(표1)

3. 지원체계 및 개념

1) 지원 범위 및 관리체계

현재 한옥지원조례에서는 남아 있는 모든 개별한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옥이 밀집되어 있는 특정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즉, 서울시는 북촌 일대를 비롯한 경복궁 서측일대, 운현궁 일대 지역을 ‘한

1) 지방자치단체 한옥보전지원조례 명칭은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주시 한옥보존지원조례」, 「전라남도 한옥지원조례」 등 지역별로 상이하다. 여기서는 이러한 조례들을 통칭하여 ‘한옥지원조례’로 명명함으로써 한옥 민박시설이나 체험시설 등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지원조례와 구분하고자 한다.

2) 한옥지원 관련 조례 41개 가운데 대다수가 2008년 이후에 제정되었다.(표 참고)

표1. 국내 한옥지원조례 제정 현황(2012년 9월 기준)

구분		법규명	부서	조례 제정일	시행규칙 제정일
서울	분청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한옥문화과	2002.05.20	2002.7.25
경기도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화성사업소 복원정비과	2009.06.19	2009.10.27
	경주시	건축조례(제7장)	건축과	2001.05.31	—
		교촌 한옥마을 조성지원 및 운영 조례	역사도시조성과	2010.05.12	—
경상북도	고령군	주택개량 및 한옥형 주택의 정려를 위한 지원 조례	—	2009.12.24	—
	안동시	한옥지원조례		2012.06.12	
	영주시	건축조례(68조의 2, 68조의 3, 68조의 4)	건축과		—
	본청	경상남도 한옥지원 조례	도시건설방재국 친환경건축과	2009.12.31	2010.12.30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시 한옥지원 조례	건축과	2011.05.30	
	창녕군	창녕군 한옥지원 조례	주택산림과	2011.07.13	
	하동군	하동군 한옥지원 조례	도시건축과	2012.01.12	
	본청	충청북도 한옥마을 조성 촉진 지원 조례	균형건설국 건축디자인과	2011.10.21	2011.11.25
충청북도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관광축제팀	2010.07.15	2010.09.01
	단양군	한옥마을 지원조례		2012.04.13	—
충청남도	부여군	건축조례(제9장)	도시주택과	1999.11.08	—
	전주시	한옥보전지원 조례	한스타일 관광과	2002.02.15	—
전라북도	완주군	한옥지원 조례	지역개발과	2010.10.07	—
	본청	전라남도 한옥지원 조례	전라남도 행복마을과	2005.12.29	2006.09.20
	강진군	한옥지원조례	도시개발팀	2009.03.20	—
	고흥군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	건설과 행복마을담당	2009.01.09	—
	곡성군	한옥 지원 조례	지역경제과	2009.04.16	2009.7.6
	광양시	한옥 지원 조례	기획예산담당관	2009.05.27	—
	구례군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	건설과	2007.11.26	—
	나주시	한옥지원 조례	건축과	2009.04.20	—
	담양군	한옥지원조례	건설과	2009.04.08	—
	목포시	목포시 한옥 지원 조례	건축행정과	2011.10.17	
	무안군	한옥지원 조례	경제개발과	2008.10.27	—
	보성군	자한옥지원조례	지역개발과	2009.03.23	—
전라남도	순천시	한옥 지원 조례	도시건설국 건축과	2008.09.29	—
	신안군	한옥 지원 조례	종합민원과	2009.08.06	—
	여수시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	건축과	2007.05.31	2007.6.29
	영광군	한옥지원조례	종합민원과	2009.04.20	—
	영암군	한옥보조금 지원조례	도시개발과	2008.01.31	—
	완도군	한옥지원 조례	자치경영과	2008.09.25	—
	장성군	한옥 지원 조례	민원봉사과	2009.06.23	—
	장흥군	신축한옥 지원 조례	지역개발과	2008.01.22	—
	진도군	한옥지원 조례	농어촌개발과	2009.04.14	—
	함평군	한옥 지원 조례	건축담당	2009.01.20	—
	해남군	한옥지원 조례	종합민원과	2008.10.17	2009.11.1
	화순군	한옥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도시과	2008.03.09	—
서울시	종로구	종로구 한옥 체험실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광기획팀	2009.12.31	—
경상북도	영양군	두들미을 전통한옥체험관 운영·관리 조례	문화관광과	2008.05.26	—
	영주시	무섬마을 한옥체험관·자료관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	2010.03.02	—
경상남도	김해시	한옥체험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	2006.05.08	—
	담양군	죽녹원 및 죽향문화체험마을 운영관리 조례	문화관광과		
전라남도	목포시	한옥민박사업활성화지원조례	관광사업과	2007.12.31	2008.7.7
		한옥민박시설의 관리·운영조례	관광사업과	2006.08.07	—
	해남군	아름마을가꾸기 한옥 민박시설 운영 조례	문화관광과	2008.07.31	—

옥밀집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들 지역 내 등록된 한옥의 개보수 및 신축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며, 전주시는 전주한옥마을 내의 한옥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편 전라남도는 10채 이상의 한옥을 신축하고자 하는 지역을 행복마을로 지정하고 행복마을 내 새롭게 조성되는 한옥의 신축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모든 지역의 개별 한옥과 모든 한옥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은 예산상의 문제와 일반한옥이 밀집되어 있을 때 창출하는 역사경관적인 가치를 보다 높게 간주하기 때문일 것이다.

서울시와 전주시는 이러한 한옥밀집지역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특히 전주시는 조례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2) 한옥등록제

서울시는 한옥 개·보수 및 신축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지정된 한옥밀집지역 내의 한옥을 대상으로 한옥등록제를 실시하여 지원을 받기 원하는 주민 스스로 한옥을 등록하도록 유도하고, 등록한옥을 대상으로 세금 감면과 한옥 수선 등의 보조 및 융자지원을 하고 있다. 한옥등록제란 한옥밀집구역 내 한옥을 소유한 주민이 일정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가질 경우, 서울시에 한옥을 등록하여 개·보수를 지원받는

제도이다. 다시 말해 한옥등록제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모두로 지원과 동시에 한옥의 임의 철거·멸실·용도변경 등의 행위제한을 둘으로써 기존 한옥을 보전하거나 유지·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 할 수 있다.³

시행 현황을 보면 서울시는 등록한옥에 한해 지원을 해주고 있는 반면, 전주시는 지원받은 한옥을 등록한옥으로 간주하고 있으며⁴, 전라남도 역시 전주시와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다.⁵

등록한옥에 대해서는 한옥등록(관리)대장을 통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옥등록 관리대장의 기재 사항을 살펴보면 건축물 현황 및 보조금 지급현황 등 대체로 비슷하나,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자자체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3) 지원 및 규제사항

등록한옥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한옥 내·외부 공간 수선 및 신축에 대해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을 하며, 지붕 등의 정기적인 수선에 대해 비용을 지원한다. 이러한 지원을 받은 한옥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임의철거 및 멸실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지원받을 당시의 용도와 가로입면 등을 유지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표2. 서울시 등록한옥 현황(2011년 10월 기준)

구분	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10
등록건수	490	108	127	44	41	38	32	15	7	17	32	29

* 출처 : 심경미, 최은숙(2011)

표3. 전라남도 등록한옥 현황(2011년 10월 기준)

구분	계	2007	2008	2009	2010	2011.10
등록건수	1,211	61	196	401	253	300

* 출처 : 심경미, 최은숙(2011)

3 조례에서는 등록한옥에 대해 한옥등록(관리)대장을 통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전주시의 한옥등록제는 2010년 12월 조례 개정시 신설되어, 2011년 6월 현재 등록한옥에 대한 별도의 자료구축은 되어있지 않다.

5 지원받은 한옥을 등록한옥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지원 후 공사 완료신청서 제출 시 한옥등록을 신청하도록 되어있어, 등록한옥 수는 건축 완료된 한옥수와 비슷하다.

4) 한옥위원회 운영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사 또는 자문을 위해 지역별로 별도의 한옥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한옥위원회는 구체적으로 한옥밀집지역의 지정 및 변경, 신청한 한옥의 등록 여부 및 지원범위, 한옥보전진흥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의 심의와 자문을 수행한다.

표4. 국내 지자체 한옥지원조례 비교 : 서울시, 전주시, 전라남도(2011년 10월 기준)

구 분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2002년 제정)	전주시 한옥보존지원조례 (2002년 제정)	전라남도 한옥지원조례 (2005년 제정)
적용범위	한옥밀집지역 5개지역 2,144,363㎡ 총 6,572동/한옥 2,358동	전주한옥마을 5개지구 296,330㎡ 총 711동/한옥 543동	한옥보존시범마을(20개) 행복마을(91개) 총 7,304동/한옥 1,343동*
지구설정/보전정비육성 (지구단위계획 수립)	규정없음 (지단으로 관리중)	지구단위계획수립 의무	-
한옥등록제	지원을 받기위해서는 한옥등록이 선행되어야	지원받은 한옥 등록한옥으로 간주	지원받은 한옥 원료시 등록한옥 으로 신청
등록한옥 행위제한	임의철거·멸실 제한 용도와 가로입면 유지	임의철거·멸실·용도변경 제한	임의철거·멸실 제한
한옥등록(관리)대장	시행	시행(2010.12 신설)	시행

* 전라남도 원료한옥은 총 774동, 1,343동은 한옥공급계획 수임

4. 지자체별 지원조례 구성체계 및 특성

초기애 조례를 제정한 서울시, 전주시 등은 기존 한옥마을의 보전 및 유지를 위한 지원으로부터 출발한 반면, 전라남도는 신규한옥 보급을 위한 지원을 위해 지원조례를 제정하였다. 2002년에 조례를 제정한 서울시와 전주시는 그 사이 한옥정책변화 및 한옥마을의 문제에 따라 조례가 크게 개정되었다. 서울시는 2008년 ‘서울한옥선언’에 따라 지원규모 및 지원범위가 확대되었고, 전주시는 전주한옥마을의 지나친 상업화로 조례규정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옥지원조례의 구성체계는 한옥의 지원을 위한 운영 및 비용지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한옥등록, 한옥수선 등의 지원, 한옥매수, 한옥위원회 관련사항 등은 공통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조세감면, 표창, 기금설치·운영, 지원의 정기화 등은 지역의 상황과 특성에 따라 지자체별로 차이를 보인다.

1) 한옥의 정의

지자체 조례에 표기된 한옥의 정의들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된 한옥의 정의보다 다양하고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지자체 조례 상 한옥의 정의를 분석한 결과 유사한 내용을 가진 여러 개의 한옥 정의가 존재한다. 그 이유로는 지역별 한옥관련 정책 및 사업 목적에 따라 한옥이 정의되거나, 별도의 목적성 없이 타 지자체의 한옥의 정의를 그대로 도입하기 때문이다.⁶

2) 한옥수선 및 신축 등의 지원 규모

보조금 지원규모는 신축 시 최대 서울시 8천만 원, 전주시 5천만 원, 전라남도 4천만 원, 개·보수 시 서울시 최대 6천만 원, 전주시 2천만 원으로 지역별 상황에 따라 다르다. 융자금 지원규모는 신축 시 서울시 2천만 원, 전라남도 3천만 원, 개·보수 시 서울시 4천만 원, 전라남도 2천만 원 까지 최대 지원 가능하며, 전주시는 융자금 지원이 없다. 서울시는 보조금과 융자금을 합하여 최대 1억 원 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이는 '서울시 한옥선언' 이전 최대 5천만 원 까지였던 것에서 상향조정된 것이다. 이에 비해 전주시는 지구별 지원액을 동일시하는 과정에서 개·보수 지원금이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축소되었다.

3) 지원 대상 및 제한조건

전주시는 2010년 12월 지나친 상업화를 막기 위한 조치로 지원 대상을 주거용 한옥으로 한정하였으며, 전라남도는 바닥면적의 규모제한을 85m² 이상으로 하고 도내 1년 이상 거주자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며 지원 시 한옥민박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와 전라남도는 한옥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전주시는 담장 및 간판 등 경관시설조성물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한옥의 평면구성, 배치 등 지역별 공간특성에 따라 가로경관에 미치는 요소들이 다른 점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지원의 정기화

한옥의 특성상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지원이 정기화 되어야 할 필요에 따라, 지붕 등 정기적인 개·보수에 대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붕 개·보수 시 5년 단위, 전면 개·보수 시 20년 단위로 지원을 신청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주시는 10년 단위로, 전라남도는 5년 단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5. 지자체 한옥지원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옥의 정의

구 분	한옥의 정의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한옥"이란 주요구조부가 목조구조로써 한식기와를 사용한 건축물 중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조례	"한옥"이란 기둥 및 보가 목구조방식이고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벗진,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하며, "전통도시한옥"이란 제3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한 건축물과 한식기와를 사용한 지붕과 목조기둥을 삼벽으로 한 목구조의 전통 양식을 유지하고 있는 건축물과 대문·담장 등을 총체적으로 칭한다.
전라남도 한옥지원조례	"한옥"이라 함은 주요구조부가 목조 구조로써 한식기와를 사용한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6 건축도시공간연구소(2010.12), 한옥 활성화 실천방안 연구, 국토해양부, P.16

5) 세금감면 등의 규정

현재 서울시, 경주시, 전주시, 수원시 등에서 한옥조례에 조세감면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제 조세지원은 서울시 종로구에서만 재산세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시 한옥지원조례에서는 한옥등록의 소유자 등에게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⁷ 이 조항을 근거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 감면조례」 제9조에서는 종로구 역사문화미관지구의 한옥에 대해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한옥 및 부속토지의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6) 한옥밀집지역 환경정비사업 지원

한옥조례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지원이 주를 이루

는 가운데, 전주시만이 유일하게 한옥마을의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전라남도는 조례에는 규정이 없으나 도의 정책으로 행복마을 조성사업에서 마을 공공기반시설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조례에 지원에 대한 언급만을 하고 있다.

7) 기금의 설치 및 운영

현재 전라남도가 유일하게 한옥의 지원을 위한 별도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전라남도 한옥발전기금의 재원은 지자체 예산과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로 확충되고 있는데, 2011년 현재 약 305억원의 기금이 조성된 상황으로 조성된 기금은 행복마을내 한옥신축의 용자금 지원에만 사용되고 있다.

표6. 국내 지자체 한옥지원조례 비교 : 서울시, 전주시, 전라남도(2011년 10월 기준)

구 분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2002년 제정)		전주시 한옥보존지원조례 (2002년 제정)	전라남도 한옥지원조례 (2005년 제정)
적용범위	한옥		한옥, 경관시설조성물, 보전대상 건축물·수목	한옥
한옥수선 등 비용지원*	보조금	외관공사 신축 8천, 전면수선 6천	한옥 신축 5천, 수선 2천 경관조성물 담장등 8백, 간판 2백	신축 4천 (도비+시군비)
	융자금	내부공사 신축 2천, 전면수선 4천 (3년거치 10년 상환)	—	신축 3천, 대수선 2천, 외관 1천 (연2%, 3년거치 7년상환)
	제약조건	—	주거용 한옥에 한함	85㎡이상 도내1년이상 거주자 한옥민박 의무
	지원의 정기화	지붕 개·보수 5년 기타 20년 단위 (최대 1천)	부분수선 10년 단위	5년 단위
세제 등 감면	재산세 감면		규정있으나 미시행	—
기금설치운영	—		—	한옥발전기금 (융자금으로 활용)

*1. 비용지원은 공사비 일정범위내 최대 지원금액 한도임

*2. 전라남도 완료한옥은 총 774동, 1,343동은 한옥공급계획 수

7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5. 정책적 시사점

1) 한옥지원조례의 상위 근거법 마련 필요

전국적으로 한옥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곳은 총 40개 지역이나, 이제까지 조례에 근거하여 한옥 수선 등에 보조금 또는 응자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은 서울시, 전주시, 경주시, 전라남도 네 곳에 불과하다. 그밖에 2011년에 경기도 수원시가 처음으로 한옥 개보수에 대해 지원한 사례가 한건 있었다. 그동안 한옥의 개·보수 지원정책은 한옥밀집지역의 한옥이 급속하게 소멸되는 것을 감소시키고 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지원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에서는 한옥지원정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겠다. 또한 한옥지원조례는 근거가 되는 상위 법률이 없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으며, 지자체장의 정책의지에 따라 한옥지원정책이 축소될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한옥의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옥지원조례의 상위법 마련과 한옥기금조성 등 재정적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한옥지원조례 개정 및 운영기준 마련 필요

한편 한옥의 체계적인 보전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한옥지원조례의 개정이 요구된다.

첫째, 등록한옥의 관리를 위해 등록대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한옥관련 DB가 체계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한옥정책의 기초자료로 매우 유용한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등록대장의 기재항목이 대체로 크게 다르지 않으나, 보다 유용한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도록 기재항목의 통일 또는 확대 보완하는 조례 개정 유도가 필요하다.

둘째, 한옥의 특성상 지속적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규정이 있으나, 지자체별로 정기적인 기간 규정의 차이가 크다. 지원의 정기화는 지자체 예산도 감안하여야 하나, 지역별로 한옥의 재료 및 시공방식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정한 기간으로 조례 개정을 유도하여 체계적인 한옥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이러한 개정은 각 지자체 상황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참고 또는 선택할 수 있도록 한옥지원 표준조례를 정부에서 마련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셋째, 조세감면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주시 사례를 볼 때 한옥조례에서의 규정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못하므로 서울시와 같이 지자체 조세감면 조례에 “한옥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

한옥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및 가치가 증대되고 있고 한옥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이 급증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옥지원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위법 마련과 한옥지원에 대한 총체적인 기준마련이 필요하다 하겠다.

※ 본 내용은 심경미, 최은숙(2011), 「한옥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및 법제도 개선 연구」를 바탕으로 재정리함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심경미

kmisim@auri.re.kr